

제2016-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이결 인건(발책 요약)

이결 3	일반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규약 전부개정안(요약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배경

- 규약 간 조문 체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,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전부개정(‘16. 9. 1.)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

2. 주요내용

- (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) 규약(일반신용정보·보험정보 제제금 부과규약) 간 체계 및 제제금 부과 업무의 흐름을 반영하여 조문 순서, 내용 등을 정비 등
- (금융기관별 제제금 부과 한도금액 설정)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제제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으로 제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신설
- (복수카드정보 및 미수발생정보에 대한 제제금 부과 근거 마련) 미수발생정보에 대한 제제금 부과 등 근거 마련
- (제제금 부과 기준금액 변경) 제제금 부과 배제기준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 및 신용정보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, 자연 기간별 제제금을 현행 대비 50%로 축소 등 변경
- (제제금 부과 배제기준 변경) 착오 등록·해제 및 삭제, 사유 발생일 오류 발생 시 제제금 배제 가능 기간 단축(1월 이내 → 7영업일 이내) 등 제제금 부과 배제기준 변경
- (제제금 미납시 조치 방안 마련)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제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, 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 제한, 신용정보 위반행위를 감독당국에 통보 가능토록 규정 신설

3. 시행일지 : 2017. 7. 1.

본 문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자산입니다. 대외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제2016-1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이결 인건(발책 전문)

1. 의결 주문

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규약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 이유

- 규약(일반·보험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규약) 간 체계 정비 및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 반영, 복수카드정보 및 미수발생정보에 대한 제제금 부과 근거 마련, 금융기관별 제제금 부과 한도금액 설정 등을 위하여 일반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규약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
 - (개정취지) 규약 간 조문 체계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,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전부개정(‘16. 9. 1.)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
 - (개정내용) 규약간 체계 및 제제금 부과 업무의 흐름을 반영하여 조문 순서, 내용 등을 정비하고,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사항 등을 반영

예)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→ 한국신용정보원(신용정보원)
 - 등록, 집중, 처리로 혼재된 표현 → 등록으로 통일
 - 카드론, 현금서비스 → 장키카드대출, 단키카드대출
 - 해지, 해제로 구분된 표현 → 해제로 일원화
 - 신용정보별 집중기한 → 신용정보별 등록시기(등록·해제·정정·삭제)

□ 금융기관별 제재금 부과 한도금액 설정

- (개정취지) "일반신용정보의 정확성·신속성 제고"라는 제재금 부과 취지를 고려하되, 금융기관의 대량 제재금 발생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- (개정내용)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

□ 복수카드정보 및 미수발생정보에 대한 제재금 부과 근거 마련

- (개정취지) 한국신용정보원 출범으로 복수카드정보 및 미수 발생정보*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 업무에 대한 제재금 부과 등 근거 마련 필요
 - * 통합 이전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여신금융협회(복수카드정보) 및 금융투자협회(미수발생정보)가 집중
- (개정내용) 복수카드정보 및 미수발생정보의 등록시기, 부과 세부요건, 배제요건 등을 제재금 부과기준(별표 1) 및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(별표 2)에 규정

□ 제재금 부과 기준금액 변경

- (개정취지)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현실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 및 신용정보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여 정보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
- (개정내용) 지연 기간별 제재금을 현행 대비 50%로 축소하며, 기업신용공여정보의 경우 일부 구간의 제재금 조정

□ 지연 기간별 제재금(미수 등 제외)	□ 기업신용공여정보 지연 제재금
- 30일 이내 : 2만원 → 1만원	- 1영업일 이내 : 변동 없음
- 90일 이내 : 4만원 → 2만원	- 1영업일 초과 : 4만원~10만원
- 180일 이내 : 6만원 → 3만원	→ 평일여신, 기업어음 : 4만원
- 180일 초과 : 8만원 → 4만원	→ 말일여신, 월말여신 : 50만원

□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변경

- (개정취지)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전부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·해제·정정·삭제 관련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
- (개정내용) 전송 오류, 착오 등록·해제 및 삭제, 사유발생일 오류 발생 시 제재금 배제 가능 기한 단축

□ 제재금 배제기한
- 전송오류 : 오류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 → 1월 이내 등록
- 착오 등록·해제 및 삭제 : 오류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등록·해제 및 삭제 → 7영업일 이내 등록·해제 및 삭제
- 사유발생일 오류 : 오류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정정 → 7영업일 이내 정정

□ 제재금 미납시 조치 방안 마련

- (개정취지) 제재금 미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
- (개정내용)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재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, 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 제한, 신용정보 위반행위를 감독 당국에 통보 가능

□ 시행일 : 2017. 7. 1

4. 참고사항

- 관계 조문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, 제26조

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제25조의2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)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
 2.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
 3. 신용정보의 가공·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 4.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
 5.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
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제26조(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)**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
 2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드는 경상경비,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
 3.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
 4.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필요한 사항

□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(붙임) <통합업무시스템 자료실 참고>

의결	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안(요약)
6	

1.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개선안

- 2013년도~2015년도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(대사)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
 - (주요내용) 이행실태조사 기간 단축,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한 소통 강화, 업무 효율성 제고 등

2.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안

-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개선안을 적용하여 2017년 2월부터 3년간 실시할 이행실태조사 계획 마련
 - (대상기관)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금융기관*
 - * 총 4,097개(2016년 9월말 현재) 단, 대부업체, 피산기관 등 일부 기관 제외
 - (조사방법) 전체 정보를 3개로 구분하여 매년 1개씩* 전 업권 대상으로 대사 실시(정보별 3년 주기)
 - * 2017년 : 신용도판단정보 2018년 : 개인대출정보 2019년 : 개설발급정보(반기대사종인 정보 제외), 개인채무보증정보
 - (조사항목) 해당 정보의 등록 및 해제 여부*, 등록사유발생일·등록금액 일치 여부 등
 - * 금번 조사에서는 등록 및 해제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, 나머지 건은 금융기관의 자체정비명단(제제금 대상 아님)으로 송부할 예정
 - (조사절차) ① 대상 금융기관에 대사실시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→ ②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→ ③ 자료 대사 및 불일치자료 송부 → ④ 정비 및 소명 → ⑤ 미정비건에 대한 제제금 확정 부과 및 금융기관 이의신청 → ⑥ 이행실태조사 종료
 - (기타사항) 불일치한 신용정보에 대한 정비기간(2개월)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된 건은 제제금 부과 배제

**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
계획안(전문)**

의결
6

1. 의결 주문

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 이유

-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행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, 3년 주기로 2017년부터 실시될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

3. 주요 내용

-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개선안
- (검토배경) '13 ~ '15년간 실시한 이행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중도 있는 이행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
- (주요내용) 이행실태조사 기간 단축,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한 소통 강화, 업무 효율성 제고 등

개선필요사항	개선안
정기간 소요 (평균 11개월)	○ 이행실태조사 절차 개선 - 정비기간(3개월 → 2개월) 및 불필요한 절차 축소로 약 5개월 단축 (평균 6개월 소요 예상)
복잡한 업무내용 및 인력 부족	○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배포 - 신용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- 불일치 자료를 최소화하여 대사업무 등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절감 ○ 단순 업무 등으로 발생한 불일치 건은 금융기관 자체정비 ○ 자료 제출 시 체계적인 테스트 환경 제공 - 실시간 정비, 정보 정비현황 파악 기능 마련 ○ 불일치 자료 제공시 금융기관 자사정보 제공 ○ 전체 정보를 3개로 구분하여 매년 1개씩 전 업권 대상으로 대차 실시(3년 주기)*
업무 상 비효율 발생	* 개선전 : 업권별로 3년에 한번 모든 정보 대차 실시 ○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대상에서 제외(말일어신 집중영향과 동일) 등
기타	

-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안

- (대상기관)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금융기관*
* 단, 대부업체, 파산기관 등 일부 기관 제외

- (조사방법) 전체 정보를 3개로 구분하여 매년 1개씩* 전 업권 대상으로 대차 실시 (정보별 3년 주기)
* 2017년 : 신용도판단정보, 2018년 : 개인대출정보, 2019년 : 개설발급정보(반기대사종인 정보 제외), 개인채무보증정보

- (조사 항목) 해당 정보의 등록 및 해제 여부*, 등록사유발생일·등록금액 일치 여부 등
* 금번 조사에서는 등록 및 해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, 나머지 건은 금융기관의 자체정비명단(제재금 대상 아님)으로 송부할 예정

- (조사 절차) ① 대상 금융기관에 대차실시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→ ②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→ ③ 자료 대차 및 불일치 자료 송부 → ④ 정비 및 소명 → ⑤ 미정비건에 대한 제재금 확정부와 및 금융기관 이의신청 → ⑥ 이행실태조사 종료

- (기타사항) 불일치한 신용정보에 대한 정비기간(2개월)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된 건은 제재금 부과 배제
○ (시행일) 2017. 1. 1.

4. 참고사항

- 관계조문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, 제26조제1항

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25조(신용정보집중기관)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"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"이라 한다)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·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26조(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
2.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드는 경상경비,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
3.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
4.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·활용에 필요한 사항

기 타 : 1)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개선안 1부(붙임)

(별지)

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계획안

목적

○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오등록된 신용정보를 정비함으로써,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

조사 개요

○ (대상기관)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금융기관*

* 단, 대부업체, 피선거관 등 일부 기관 제외

< 이행실태조사 대상 기관(2016년 9월말 현재) >

업 권 명	기관수	비고
은행업권	63개	* 농수협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은 소속 법인수 기준 ** 종금사, 우체국, 신용보증재단, 산림조합, 창업투자사, 자선운용사, 기타기관 등
여전업권	67개	
보험업권	35개	
증권업권	52개	
지역농수협*	1,221개	
새마을금고*	1,329개	
신용협동조합*	902개	
저축은행	79개	
기타기관**	349개	
계	4,097개	

○ (조사방법) 전체 정보를 3개로 나누어 매년 1개씩 전 업권 대상으로 대차 실시(정보별 3년 주기)*

* 2017년 : 신용도판단정보, 2018년 : 개인대출정보, 2019년 : 개설발급정보(반기 대차종인 정보 제외), 개인재무보증정보

< (참고) 이행실태조사 방법 관련 경과 >

연도	이행실태조사 방법
~ 2012년	연간 150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점 또는 서면 조사를 실시
2013년 ~ 2016년	2012년 감사원의 「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전산 전수대사 실시(전체 금융기관의 1/3을 연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신용정보에 대하여 실시(금융기관별 3년 주기))
2017년 ~	전체 정보를 3개로 나누어 매년 1개씩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사 실시(정보별 3년 주기)

- 다만 금융기관이 신용정보 집중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* 수시조사 실시 가능
 - * 정책감독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제제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

□ 조사 절차

① 대상 금융기관에 대서실시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

- 조사자료 작성기준일로부터 1개월 전 요구자료 양식, 자료 제출방법, 제출시기 등을 종합 안내(설명회 개최 등)

②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

- 조사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의 대서파일설계서 형식에 따라 제출

③ 자료 대사 및 불일치자료 송부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보의 등록 및 해제 여부*, 등록사유발생일·등록금액 일치 여부 등을 전산대사하여 불일치 건을 금융기관에 송부(제제금 예정부과)

* 금번 조사에서는 등록 및 해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, 나머지 건은 금융기관의 자체정비명단(제제금 부과 대상 아님)으로 송부할 예정

④ 정비 및 소명

- 금융기관은 불일치 건을 정비기간(2개월)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비하고, 불일치 자료중 정비가 필요 없는 건에 대해 소명

⑤ 미정비건에 대한 제제금 확정부과 및 금융기관 이의신청

- 특정한 사유없이 정비기간내 미정비한 건에 대해서는 고의·부적절 제제금(1백만원) 확정부과
- 금융기관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부과 건에 대해 이의신청(공문 송달일로부터 30일)하고,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정비 확정부과 이의신청 기간 종료시 이의신청하고 정비한 건에 대해서는 누락 제제금 부과 가능

⑥ 이행실태조사 종료

- 이행실태조사 완료 공문 발송(확정부과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제제금 최종 부과)

□ 시행일 : 2017. 1. 1. 끝.

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개선안

2016. 10.

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

1 현황 및 검토 배경

□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집중하는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신용정보 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실시

○ **[배경]** 2012년 감사원의 「금융권역별 감독실태」 감사 결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 관리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·신속성 유지 및 정기적인 점검 필요성 제기 → 제2012-4차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전 금융기관에서 집중하는 모든 신용정보를 전산으로 대사하는 신용정보 대사 실시방안 의결

○ **[근거]*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5항*
 *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"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"이라 한다)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·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○ **[대상 정보·업권]** '13 ~ '15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설발급정보(신용카드 개설발급정보는 반기별 실시), 개인대출정보, 채무보증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기업신용공여정보에 대해 실시(2016년 9월 종료)

연도	대상 업권
2013년	은행, 보험, 증권, 새마을금고, 외국은행 등
2014년	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여신금융, 신용보증기금 등
2015년	저축은행, 농수협 조합, 우체국, 종합금융, 자산운용사 등

○ **[효과]** 오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비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에 발생할 민원, 체재금 등을 사전 예방

→ 신용정보원은 지난 3년간 실시한 이행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안 마련 후 금융기관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(9~10월중)하였으며, 제출 의견을 검토·반영한 최종 개선안 마련

2 이행 실태조사의 문제점

- 평균 11개월 가량 소요되는 대사 절차
 - 신용정보원과 금융기관 양측에 업무부담이 발생하며, 대사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 발생
- 복잡한 업무내용 및 인력부족
 - 대사·제제금 절차, 정확한 정비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업무 특성으로 인해, 업무숙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
 - 제제금 부과 등의 리스크는 큰 반면 업무 성과 및 경영진의 관심도는 적어 업무 우선순위가 낮음
- 비효율적 업무 진행
 - 실제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 단순 추출 오류 건 등이 불일치 자료에 대거 포함되어 시간·인력 과다 소모
 - 금융기관의 전산·현업 담당자, 신용정보원의 이행실태조사 담당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역량 미비

3 이행실태조사 개선안

1. 주요 절차 개선 시행(세부 내용은 별임1 참조)

- 자료 제출시 체계적인 테스트 환경 제공
 - 전체 자료 제출 이전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일부를 신용정보원에 제출하면 신용정보원의 등록정보와 전산대조 후 불일치 자료 및 세부 오류 내역 제공
-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배포
 - 신용정보관리보호인·실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 사전교육 강화(동영상 강의 등 포함)
 - 대사자료 추출 기준, 신용정보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* 배포(동영상 강의 등 포함)
 - * 사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 처리방법, 오류 파일 해석방법, 자주 발생하는 문제 케이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예정
 - 공통 질문,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(Q&A게시판 등) 운영
- 단순 오류 등으로 발생한 불일치건은 금융기관 자체정비
 - 단순 사유구분 코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일치 건*에 대해서는 별도 명단을 분리하여 송부하고 금융기관 자체 정비 후 정비 결과만 수신(제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)
 - * 개인(법인)사업자의 불일치자료 제공시 불일치된 식별번호의 연결 식별번호가 일치명단에 있는 경우 등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특정 예정
- 불일치 자료 제공시 금융기관 자사정보 제공
 - 불일치 자료와 함께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등록된 정보의 내역(기준일 시점)을 제공하여, 정비를 위해 정보를 다시 조회 하는 절차 생략

- **정비기간 단축(3개월 → 2개월) 및 효율적인 정비 환경 마련**
 - 신용정보원 담당자와 금융기관 담당자가 하나의 전산화면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집중도 있는 업무처리 추진
 - 전산 개발을 통해 ① 실시간 정비* ② 정보 정비 현황 파악 기능** 등을 마련
 - * 통합업무시스템에 업로드 된 정비대상을 즉시 정비할 수 있는 화면과 링크
 - ** 정비가 완료된 건을 명단에서 다른 방식(반투명 등)으로 표시하고, 총건수 및 정비건수 등을 제공하여 현재까지의 정비 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
- **제제금 예정부와 절차는 불일치자료 송부로 같음**
 - 불일치자료 송부 후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것 등을 감안
 - 불필요한 공문 송·수신 절차를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

< **현행 및 개선안 업무처리절차 비교** >

절차	현행 기간		개선안 기간		비고
	소요 기간	누적 기간	소요 기간	누적 기간	
1 대시설시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[신용정보원]	1	1	1	1	동일
2 자료 제출 [금융기관]	0.5	1.5	0.5	1.5	
3 자료 대사 및 불일치자료 송부 [신용정보원]	0.5	2	0.5	2	
4 정비 [금융기관]	3	5	2	4	

본 문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자산입니다. 대외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절차	현행 기간		개선안 기간		비고	
	소요 기간	누적 기간	소요 기간	누적 기간		
5 제제금 부과대상 자료 추출 및 송부 [신용정보원]	0.5	5.5			5, 6, 7 의 절차 통합 (제제금 예정부와 절차는 불일치자료 송부로 같음)	
6 제제금 부과대상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소명 [금융기관]	2.5	8	1	5		
7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 및 확정부과 통보 [신용정보원]	2	10				
8 확정부과 이익신청 및 제심사(대사 종료)	1	11	1	6		
						(현행) 11개월 → (개선안) 6개월

2. 주요 기준 개선 사항(세부 내용은 별임2 참조)

- **[불일치 자료 추출 기준]** 발생일/금액 불일치(803)는 불일치 명단 추출 기준에서 제외하고 자체정비명단으로 제공
- **[대상기관 및 조사방법]** 협회 및 중앙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관 등도 이행실태조사 기관에 포함하고, 전산대사 수행 역량 부족 기관은 별도의 서면조사 실시
- **[대사주기]** 업권별로 3년에 한번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행실태조사를, 전체 정보를 3개로 나누어 매년 1개씩 전 업권 대상으로 대사 실시(3년 주기)*

* (예시) 1년차 : 신용도 판단정보, 2년차 : 개인대출정보, 3년차 : 개설발급정보(반기대사중인 정보 제외), 개인채무보증정보

- **대상정보** 올해 신규 추가된 정보(복수카드 정보, 미수 정보등), 기업신용공여정보는 이행실태조사 대상정보에서 제외
- **기타 사항** 금융기관 직원의 자발적인 대사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담당자 표창, 연말 행사 등 검토

4 기대 효과

- 평균 11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 대폭 단축
 - 신용정보원과 금융기관 양측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, 단축된 기간 동안 집중도 있게 업무 처리
- **업무처리**의 효율화
 - 단순 실수, 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추출되던 불일치 명단, 예정부과명단 현실화
 -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면서 핵심 사항(신용정보의 유무)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효율적이고 집중도 있는 이행실태조사 실시
 - 지난 이행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실무상 예외사항(변거로운 추가 조회 절차, 정비현황 파악의 어려움)을 해소
- **이행실태조사 절차** 등 신용정보 업무 관련 교육 강화
 - 설명회 개최,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이행실태조사 관련 업무간 혼란 최소화
 - 아울러 이행실태조사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 및 제재금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 실시로 신용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

붙임 1 절차 관련 세부내용

□ 절차 개선 사항

관련절차	문제점	개선안	기대효과
	자료 제출 단계에서 단순 추출 오류로 불일치 정보가 과도하게 추출 → 실제 불일치 하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 발생	체계적인 테스트 환경 제공 (예시) 금융기관이 가진 정보중 10% 정도를 샘플로 추출하면 신용정보원은 해당 샘플에 대해 불일치 자료 및 오류케이스 안내	과도한 불일치 항목 추출 예방으로 향후 정비 및 예정부과 명단 감소

☑ 자료 제출 (금융기관)

금융기관 현업, 전산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나 실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	육 강화 실시 (대사 실시중) 대사자료 및 불일치자료 추출 기준, 신용정보 정비 방법, 제재금 부과 및 소명 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(동영상 강의 콘텐츠 포함) * 사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 처리방법, 오류 파일 해석방법, 자주 발생하는 문제 케이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예정	(대사 실시전)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, 실무(현업, 전산)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사전 교육 강화 실시	금융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증진시켜 단순오류, 실수 등으로 인한 문제를 최대한 예방
---	---	---	---

관련절차	문제점	개선안	기대효과
<p>단순 오류 사유구분 코드 오류 등으로 발생한 건도 불일치자료에 포함 후 일괄 송부하여,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저하</p>	<p>단순 오류 등으로 발생한 불일치 건은 따로 분리하여 송부하고, 해당 명단은 금융기관 자체정비(제제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)되고, 최종 정비 결과만 공문으로 수신) *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건, 개인(법인)사업자의 불일치자료 제출 시 불일치된 식별번호의 연결 식별번호가 일치명단에 있는 경우 등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특정 예정</p>	<p>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건을 재공하여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</p>	
<p>금융기관에서 불일치 명단을 송부 받은 후 정비를 위해 신용정보원 정보를 다시 조회 해서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 발생</p>	<p>금융기관에 불일치 자료 제출시 집중기관에 기 집중되어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정보(기준일 시점)를 함께 제공</p>	<p>금융기관의 정비 정도에 따라 확정부과건수가 0이 되어 이행실태조사 조기 종결이 가능하며, 신용정보원에서 정비 현황을 파악하여 대량 확정부과와 같은 리스크가 큰 상황 방지</p>	

☑ 자료 대서 및 불일치자료 송부 [신용정보원]

관련절차	문제점	개선안	기대효과
<p>☑ 제제금 확정 부과 대상 자료 추출 및 송부 [신용정보원]</p>	<p>이미 정비가건을 부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제금 예정부과와 소정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됨</p>	<p>예정부과는 불일치 자료 송부로 걸음하고, 정비기간 종료 후 확정부과 명단을 송부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한 금융기관은 확정부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소명 기회 제공</p>	<p>과도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조사기간 대폭 단축 가능</p>

☐ 예상 문제점 및 보완책

예상문제점	보완책
<p>단순 오류 등으로 발생한 불일치 명단은 따로 분리하여 송부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명단은 정비하지 않고, 이행실태조사 를 종결할 가능성 존재</p>	<p>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받은 후, 해당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포함한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에게 통지</p>
<p>예정부과를 생략하고 바로 확정부과 명단을 송부하면, 확정부과가 대량으로 나오는 금융기관이 있을 경우 소명의 물리적인 시간 부족</p>	<p>해당 케이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정비 상황 파악 기능을 마련하여 이행실태조사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였으며,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 정비를 하지 않은 기관이 아니라면 정비기간이 부족해서 대량으로 부과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</p>

붙임.2 기준 관련 세부내용

□ 기준 개선 사항

현행 절차	개선안	기대효과
<p>현재 신용정보원과 금융기관의 대사이 해제누락(801), 등독누락(802), 발생일/금액 불일치(803) 세가지 유형으로 불일치 정보를 과도하게 추출하는 문제 발생</p>	<p>발생일/금액 불일치(803)는 불일치 명단 추출 기준에서 제외하고 자체정비명단으로 송부하여 신용정보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대사 개편</p>	<p>불일치 명단의 건수가 대폭 감소하여, 집중도 있는 이행 실태조사 실시 가능</p>
<p>협회 및 중앙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관 등은 대사 기관에서 제외(상기 기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전산 역량이 부족한 곳이 많음)</p>	<p>신용정보 집중 기관은 모두 이행실태조사에 포함시키되, 전산대사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 (단, 대부업체는 신용정보 집중초기이며 대상기관 및 집중기준일의 변동이 잦은 점을 감안하여 금번 대사에 서는 제외)</p>	<p>규모가 영세한 기관 역시 이행실태조사 가능</p>
<p>업권별로 3년 주기로 실시</p>	<p>전체 정보를 3개로 나누어 매년 1개씩 전 업권 대상으로 대사 실시(3년 주기) * (예시) 1년차 : 신용도 판단 정보, 2년차 : 개인대출정보, 3년차 : 개설발급정보(반기대사 중인 대사정보 제외) 개인채무 보증정보</p>	<p>이행실태조사 주기 단축, 금융기관의 업무 형태(정보별로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음)에 맞는 이행실태조사 실시</p>
<p>기업신용공여정보의 경우 불일치자료에 대한 자체정비(최근일자로 신용공여총액 및 연체총액 등 불일치 금액 조정 등) 후 조치결과만을 송부받음</p>	<p>현행 대사 방식은 말일보(자사 보유 정보 전체) 집중과 동일하므로, 이행실태조사 항목에서 제외</p>	<p>중복 업무(말일보 집중, 이행실태조사)를 제외하여 효율성 증가</p>

본 문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자산입니다. 대외 반출 시 3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